

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

신 청 인(원고)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(피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- 1.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가단○○○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, 피고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나○○○호로 항소를 하고 대법원 20○○다○○○호로 상고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어 20○○. ○. ◇고기각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.
- 2.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판결문사본 3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(원고)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계 산 서



1. 제1심 소송비용

인지대: 금 151,300원 송달료: 금 60,000원

변호사보수: 금 1,450,000원+(금 32,519,400원-금 30,000,000원)×3/100

= 금 1,525,580원

소계: 금 1,736,880원

2. 제2심 소송비용

변호사보수: 금 1,450,000원+(금 32,519,400원-금 30,000,000원)×3/100

= 금 1,525,580원

소계: 금 1,525,580원

3. 제3심 소송비용

변호사보수: 금 1,450,000원+(금 32,519,400원-금 30,000,000원)×3/100

= 금 1,525,580원

소계: 금 1,525,580원

4. 신청비용

인지대: 금 1,000원 송달료: 금 10,000원 소계: 금 11,000원

5. 합계 금 4,799,040원(1+2+3+4)

소송비용부담 판결은 '1심, 2심, 3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'이므로,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부담액은 금 4,799,040원입니다.

제출법원	소송이 제기된 법원(수소법원)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110조	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) ·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			
비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기 타	신청서첨부서류 : 비용계산서, 비용소명서면, 계산서 등본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비용